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12조에 의거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8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연번	시 설 명	소 재 지	시설현황		보육정원 (현원)	보 육 교직원	취약보육
			연면적 (㎡)	규 모			
1	서대문어린이집	서대문구 증가로 29길 30-42	259	지상3층	77 (76)	14	장애아통합, 시간연장형, 휴일보육

2. 위탁기간 : 2020. 1. 1 ~ 2024. 12. 31.(5년)

3. 신청자격

- 가.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 운영능력이 있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
- 나. 법인,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, 개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원장 자격이 있는 자
- 다.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에 영유아 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,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.
- 라. 운영체의 원장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1조 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

4. 신청 제외대상

- 가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나. 최근 5년 이내 보육관련 법령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- 다. 공고일 기준으로 타 어린이집 대표 및 원장
- 라.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·단체
- 마. 타인(법인, 단체 포함)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
- 바. 영리·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
- 사.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·단체
- 아. 최근 5년 이내에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, 서대문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을 중도 포기한 자
- 자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·단체 및 개인

5. 신청서 접수

- 가. 공고기간 : 2019. 11. 8. ~ 2019. 11. 28.(20일 이상)
- 나. 접수기간 : 2019. 11. 25. ~ 2019. 11. 28. 18:00까지(단,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)
- 다.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: 서대문구청 2층 여성가족과
- 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제출(토일요일 및 우편, 택배, 인터넷 접수 불가)
- 마. 제출서류

구분	서류항목	운영체			비고
		법인	단체	개인	
개별 사항	•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	○			
	• 등록증,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○		
	•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		
	• 주민등록등본			○	
공통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• 이력서, 자기소개서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 •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 •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·부채 현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 - <u>공고일 전일</u> 현재 잔액증명 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) •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•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[영유아보육법 제26조와 관련 서대문어린이집에서 실시중 이던 취약보육(장애아통합, 시간연장, 휴일보육)에 대한 계획서 및 운영경비와 유지 방법 반드시 포함 및 예·결산서 • 자부담 승낙서 • 기타 추가로 필요한 서류 				

바. 제출부수 : 위탁신청서 및 심의 관련서류 16부

(원본 1부 제출 후 여성가족과 서류검토 완료 후 책자 15부 제출)

- 심사자료는 양면인쇄(쪽수표시), 목차 작성(평가항목 순서대로 정렬), 반드시 제본
- 첨부양식 중 서식(항목 등) 임의변경 금지, 글씨체 서울남산B로 반드시 통일
- 총페이지는 100 ~ 150 페이지 이내로 작성
- 발표자료(PPT)는 심사자료 제출 시, 메일(kiryang@sdm.go.kr)로 제출

6. 위탁(운영)조건

가.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 전반

나.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다. 어린이집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과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있어야 함

라.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 관련 서대문어린이집에서 실시중이던 장애아 통합, 시간연장, 휴일보육을 계획하여 실시하여야 함

마. 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관계자와 친·인척 원장 임용금지 및 대표자·관계자·원장의 친·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하며 개인의 경우 원장의 친·인척 종사자 임용 금지함

※ 친·인척 : 직계존비속, 배우자,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
바. 개인 신청자의 경우 선정 결과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 또는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위탁 취소

사.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,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,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, 운영 위탁 약정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

아.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위탁체 선정 무효

자.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어린이집운영 위탁계약서」로 별도 체결

7.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

가. 심사항목 :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,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, 운영체의 공신력,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

나. 선정방법 :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선정(심사일 별도 통지)

다. 면접방법 : 신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운영계획 설명과 심사위원 질의·응답 순으로 실시

라. 결과발표 :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재

마.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(법인·단체·개인)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우리구와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(단, 위탁자의 사정에

- 의한 경우는 예외)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, 향후 2년간 우리구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에서 제외됨.
- 바.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,2순위가 선정되었을 경우, 1순위가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순위를 위탁자로 결정·계약할 수 있음
※ 단, 2순위 선정은 70점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있을 시에만 선정함.
- 사. 위탁체 신청자 중, 70점 이상 자 중에서 최고 점수자를 위탁체(자)로 선정하며, 위탁 심사결과 운영체(자) 모두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, 재모집 공고
※ 위탁체 신청이 1개라도 심의하며, 심의 결과 평균 70점미만이면 탈락 후 재모집 공고

8. 기타사항

- 가.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나.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민·형사상 고발 조치
- 다. 신청서는 서대문구 홈페이지(www.sdm.go.kr) 고시 공고란에 공고문과 동시 게재함.
- 라.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청 여성가족과(☎330-1687)로 문의 바람.